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55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2201855)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6조) ...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1) 입법배경 및 개정안의 취지	3
2)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으로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5
3)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으로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8
4) 부칙	9
다. 국토교통부 의견	9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220185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안 제46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승객으로 하여금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에 대한 처벌을 (1)그 조작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2)그러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1)전자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2)후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신설>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신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입법배경 및 개정안의 취지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착륙 직전 승객의 출입문 개폐장치 불법 조작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을 겪은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이던

항공기와 2023년 11월 미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 시도 2건이 더 발생¹⁾하였음.

현행법 제23조제2항²⁾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³⁾에서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5월에 발생하였던 비상문 개방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1심 선고가 내려졌고, 6월에 발생했던 비상문 개방 시도 사건의 경우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11월에 발생한 비상문 개방 시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음⁴⁾.

1) SBS NEWS, 10대 승객 "가슴 답답"...또 항공기 비상구 난동, 2023.6.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517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연합뉴스, 또 비행 중 여객기서 문 개방 시도...이번엔 마약투약 20대(종합), 2023.11.23.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092651065>

2)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법률신문,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2023.11.21.

<https://www.lawtimes.co.kr/news/193426>

KBS뉴스,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필로폰 중독' 10대 1심서 실형, 2023.10.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9492>

YTN,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4.3.22.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21314260176

연합뉴스,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2024.7.12.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그 행위로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여,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제46조에 따른 처벌과 관련하여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나, 이미 기사화되어 알려진 사건만 3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처벌을 개정안과 같이 강화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으로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다수 존재함.

그 가중처벌의 수준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1조는 항공시설 파손·조작 방해에 대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법 내에서 처벌의 형평성은 갖춘 것으로 보임.

「항공보안법」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항공안전법」 제139조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항공안전법」 제138조)의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 법 제41조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안 제46조제1항의 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顛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협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80조제1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정안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철도안전법」 제78조제1항)의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사상’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제7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가중처벌의 수준을 규정함에 있어 이러한 입법례의 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으로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은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으로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10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처벌을 강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현행법 상으로는 폭행·협박·위계행위와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것은 해당 범죄들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입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폭행·협박·위계행위 등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다른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유지하되,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한 법정형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가 다른 행위에 비해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부칙

헌법 제13조제1항⁵⁾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조제1항⁶⁾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바, 형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하거나 강화한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적용례,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는 개정안 부칙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행위는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반행위로서 벌칙 상향에 동의하며,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임.

5)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6)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580